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4일, 김기웅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8.)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웅의원)

북한은 6·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고,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임.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바, 6·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개정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시납북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북자가

대거 발생하였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납북자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여 자진 월북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남은 가족들을 감시하거나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등을 적용하기도 하였던 바,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건)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령에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 있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다양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삭제함.

수정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없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부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제2항 중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1조의2(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11조의2(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u>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부칙 -----<u>공포한</u>-----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u>